知的所有權保護를 위한
國際機構및 條約의 紙上探訪

○…… 知的所有權 保護를 위한 國際機構 및 條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가장 基……○
○……礎的인 質問같지만 선뜻 體系的 對答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이……○
○……들 機構 및 條約과 접할 機會가 적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知的所有權의 國際化時代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들 機構 및 條約을……○
○……모르고는 知的所有權의 保護를 期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本誌는 紙上探訪을 마……○
○……련, 이들 機構 및 條約을 紹介하기로 했다.……<金 亨 昊 記>……○

◉ 第 5 回 ◉

■ 이달의 目次 ■

■ 商品出處의 虛僞表示 禁止를 위한 마드리드 協定
■ 올림픽標章의 保護에 관한 나이로비 條約
■ 意匠의 國際分類를 設定한 로카르노 協定
<다음號에 繼續>

■ 商品出處의 虛僞表示禁止를 위한 마드리드協定

▲ 正式名稱

Madrid Agreement for the Repression of False or Deceptive Indications of Source on Goods of April 14, 1891, as Revised at Washington (1911), The Hague(1925), London(1934) and Lisbon(1958), and Supplemented by the Additional Act of Stockholm (1967)

▲ 加入國現況

86年 10月現在, 이 協定의 當事國은 알제리, 브라질, 불가리아, 쿠바, 체코슬로바키아, 도미니카, 이집트, 프랑스, 東獨, 西獨,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日本, 레바논, 리히텐스타인, 모나코, 모로코, 뉴질랜드, 폴란드, 포루투갈, 샌마리노, 스페인,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튀니지, 터어키, 英國 및 베트남등 32個國이다.

▲ 沿 革

◉ 배 경

• 파리協約 10條 "原產地등의 虛僞表示防止"規定이 不充分

• 이를 강화키 위한 協約改正案이 1886年 로마改正會議에 英國에 의해 提出

• 各 同盟國의 意見不一致로 否決

◉ 調 印

1891.4.14 이러한 趣旨에 찬동하는 국가간에 特別協定으로 成立

◉ 改 正

• 1911年 워싱톤, 1925年 헤이그, 1934年 런던, 1958年 리스본, 1967年 스톡홀름(追加協定)

▲ 加入節次

파리協約의 當事國은 누구나 本 協定에 加入할 수 있으며 본 協定의 當事國이 되기 위해서는 비준서 또는 加入書를 WIPO 事務局長에게 寄託하여야 한다.

▲ 主要 規定

• 本協定의 當事國 또는 當事國內의 한 場所를 原產國 또는 原產地인 것처럼 직접 또는 間接으로 表示하는 수단으로 出處의 虛僞表示를 한 모든 商品에 관하여는 輸入時 差押 또는 그러한 輸入이 禁止되거나 이러한 輸入에 관련하여 기타의 조치 및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 本 協定은 差押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와 그에따른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모든 商品의 販賣, 展示 또는 販賣를 위한 제의등과 관련하여 그 商品의 出處에 관하여 公衆을 기만할 우려가 있는 모든 表示의 使用을 禁하고 있다.

어떤 名稱(포도의 생산지에 관한 지역명칭과는 다른)이 그들의 통속적 성질때문에 본 協定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의 결정은 各 締約國의 法院에 유보된다.

▒ 올림픽標章의 保護에 관한 나이로비 條約

▲ 正式名稱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of September 26, 1981

▲ 加入國現況

86年 10月現在, 이 條約의 當事國은 알제리, 아르젠티나, 바르바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콩고, 쿠바, 시프러스,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큐아토리알기니아, 이디오피아, 그리스, 파테말라, 인도, 이태리, 자마이카, 케냐, 멕시코, 카타르, 오만, 샌마리노, 세네갈, 소련, 스리랑카, 시리아, 토고, 튀니지, 우간다, 우루가이등 32個國이다.

▲ 調 印

케냐정부의 초청으로 1981年 9月 24日부터 26日까지 3日間 나이로비에서 63個國 200여명의 代表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올림픽 標章의 保護에 관한 條約의 채택을 위한 WIPO외교회의에서 1981.9.26 채택되어 이태리등 21個國이 署名 함.

▲ 加入節次

WIPO, 파리同盟, 국제연합(UN) 또는 UN專門機關의 當事國은 어느 國家라도 本 條約에 加入할 수 있으며 加入 하기 위해서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加入書를 WIPO事務局長에게 寄託하여야 한다.

▲ 主要 規定

· 本 條約의 모든 當事國은 올림픽 標章을 그 所有者인 國際올림픽 委員會(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의 허락없이 商業目的(廣告, 商品, 商標 등)을 위한 使用에 대하여 그것을 保護할 의무를 진다.

또한 本 條約은 올림픽 標章을 商業目的으로 使用키 위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사용료가 지불되었을 때, 그 수익의 일부는 관계 국가 올림픽위원회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本 條約은 국가올림픽위원회, 特히 開發途上國 국가올림픽위원회에 있어서 경기장 및 수영장등과 같은 새로운 스포츠시설의 건립 및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올림픽 게임의 참가에 따른 비용 조달등을 위한 새롭고 매우 중요한 재원을 마련하기도 한다.

▒ 意匠의 國際分類를 設定한 로카르노 協定

▲ 正式名稱

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 of October 8, 1968.

▲ 加入國 現況

86年 10月 現在, 이 協定의 當事國은 체고슬로바키아, 덴마아크, 핀란드, 프랑스, 東獨,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소련,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및 유고슬라비아등 15個國이다.

▲ 沿 革

· 1968.10.8 調印

· 1979年 修正

▲ 加入 節次

파리協約의 當事國은 누구나 本 協定에 加入할수 있으며, 본 協定의 當事國이 되기 위해서는 비준서 또는 加入書를 WIPO事務局長에게 寄託하여야 한다.

▲ 主要 內容

—本 協定은 意匠의 分類를 設定한다.

—當事國의 國家工業所有權廳은 意匠의 寄託또는 登錄을 위한 公式書類에, 이러한 意匠이 이미 公式的으로 公表된 경우에는 이를 公表한 刊行物에 그 意匠이 포함된 商品에 該當하는 國際分類表上의 類 및 細類의番號를 記載하여야 한다.

—本 協定에 따라 構成된 專門家委員會는 分類의 定期的 改正作業을 수행한다.

—分類는 32個類 및 210個細類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이들 상품이 속하는 類 및 細類의 表示와 함께 商品의 알파벳順 目錄도 포함되어 있다.

—이 目錄에 記載되어 있는 商品은 約 6,250種이다.

〈계속〉